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 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전의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賃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호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을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을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을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를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 2) 좌식 샤워시설
- 3) 수건걸이 높이 조정(1.0~1.2m)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신설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 자격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종전의 「국가유공자법」(법 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 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 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 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 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 특별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 건 등) ① ----- ----- -----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賃 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
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賃借人) 자
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
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
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
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
다) 또는 「지방공기업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가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

2. 제1호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
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정한다.

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
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거약자용 주
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
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
행령」 제44조제1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
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
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보증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

<삭 제>

<삭 제>

2. 제1호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
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
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한다.

4. 부엌(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치할 것

나.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성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룩스(lux)로 한다.

4. 부엌(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 ~ 400룩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치할 것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2) 좌식 샤워시설

3) 수건걸이 높이 조정(1.0~1.2m)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60